

보도	2023.12.21.(목) 석간	배포	2023.12.20.(수)		
담당부서	감사인감리실 감사인감리총괄팀	책임자	실 장	권영준	(02-3145-7860)
		담당자	팀 장	유형주	(02-3145-7862)

대형(Big4)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시 기업의 체크포인트 !!!

〈주요 내용〉

- ◆ 대형회계법인(이하 'Big4')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하여 드립니다.

[기업의 체크포인트]

- ✓ **감사보수 협의시** 참여 공인회계사의 **직급별 감사시간·임률 정보 요구**
- ✓ **감사계약시 환급규정**을 **확인**하고 감사종료후 감사투입시간 확인
- ✓ **감사계약시 부대비용 지급항목**을 **명시**하고, **지급시 세부명세 수령**
- ✓ **외부평가 및 포렌식 요구**에는 **합리적인 설명**을 요청
- ✓ **외부감사시** 약속된 감사참여자와 **실제 투입인원 전문성(직급 등) 확인**

<참고> Big4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제('23.10.18.)

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직급별 시간당임률 정보 제공 · 감사시간 과소 투입시 환급 절차 명확화
부대비용 청구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실비변상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청구 금지 · 부대비용 집계 시스템 등 내부통제 강화
외부감사 관행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부평가 요구시 내부프로세스 강화 · 감사투입 인력의 전문성 확보

I . 개요

- '23.10.18.(수) 금융감독원은 삼일·삼정·안진·한영 회계법인(이하 “Big4”)과 함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「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Big4와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받는 기업이 관련 개선내용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하여 드립니다.
- ☞ (참고) 「금감원과 4대 대형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.」 ('23.10.18. 보도자료)

II . 관행 개선방안별 기업의 체크포인트

- ① (감사보수정보) Big4는 ⁱ⁾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, ⁱⁱ⁾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

⇒ (Check Point) Big4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협의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고, 직급별 감사시간,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

- ② (감사보수환급) Big4는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, 감사종료후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

⇒ (Check Point) Big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, 감사종료 후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여 환급 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*

* 감사투입시간 감소외에 기타 감사보수 증가요인 등도 고려 필요

- ③ **(부대비용청구)** Big4는 ⁱ⁾부대비용 청구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, ⁱⁱ⁾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항목은 부대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음

⇒ **(Check Point)** Big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시 별도로 지급할 부대비용 항목을 협의하여 명확히 기재하고, 부대비용 지급시 세부명세를 수령하여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

- ④ **(외부평가요구)** Big4는 ⁱ⁾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감사대상 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, ⁱⁱ⁾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

⇒ **(Check Point)** Big4 회계법인이 특정 계정과목 등에 외부 평가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고,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*

* 다만, 기업이 저가의 부실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일부 기관의 평가를 제한할 수 있음

- ⑤ **(회계사배정)** Big4는 ⁱ⁾중요 과목(매출, 매출원가 등)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, ⁱⁱ⁾수습·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, ⁱⁱⁱ⁾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

⇒ **(Check Point)** Big4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시 제시한 수준에 비해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는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

Ⅲ. 향후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금번 Big4의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,
 -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